



노량진학원
T. 1544-0336



온라인학원
T. 1544-5006

26.1차대비 형법각론 확인학습 22회

26년 1차대비

담당 : 임종희 교수

cafe.naver.com/impaper64

● 형법각론 확인학습 (제22회) ●

※ 다음 지문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은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현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따라서 이미 석방되어 있는 보석 중에 있는 자, 가석방 중에 있는 자, 구속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특수도주죄는 수용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합동범이다.()
4.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5. 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인을 도피시킴에 대하여 동조 제2항과 같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인을 도피시킴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공동정범인의 도피행위를 용이케 함은 동 방조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6.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죄사죄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사죄를 구성한다.()
7. 형법 제151조 제1항(도주죄)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8.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면 동 죄를 인정할 수 없다.()
9.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그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공소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0. 갑이 자신의 친구 을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을의 부탁으로 자신의 처 병명의로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1. 경찰관 갑은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 을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2. 주점 개업식 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시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13.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14.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15.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16. 갑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여 을 등의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하였는데, 그 후 갑의 사기 피고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갑과 공모하여 진범 을 등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인 갑에게 결의를 강화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한다..()
17. 형법 제151조 제2항(범인도피) 및 제155조 제4항(증거인멸)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 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① 범인은닉·도피죄(제151조 제1항) ② 증거인멸죄(제155조 제1항) ③ 증인은닉·도피죄(제155조 제2항) ④ 모해증거인멸죄·모해증인은닉도피죄(제155조 제3항)는 친족간의 특례는 적용되나, 자백자수의 특례 규정은 없다.()
19.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0.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치분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1.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범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3.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4.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 경우, 모르는 사실을 잘 안다고 진술한 경우나 전문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노량진학원
T. 1544-0336



온라인학원
T. 1544-5006

26.1차대비 형법각론 확인학습 22회

26년 1차대비

담당 : 임종희 교수

cafe.naver.com/impaper64

- 25.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B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공범중속성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법」 제31조 제1항이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3조 단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甲이 신분이 없는 B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 26.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운영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이상 위 종업원은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7.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 28. 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위와 그 증언 내용,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서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 29.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당할 염려가 없어 그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어도 허위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30. 한편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에도 유추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나 국회의 증언절차에서는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않았어도 선서하고 허위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31.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3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33.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진술이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 34.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 35. 같은 민사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최초의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도 위증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36.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37.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감정보고서 제출행위마다 각기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한다.()



노량진학원
T. 1544-0336



온라인학원
T. 1544-5006

26.1차대비 형법각론 확인학습 22회

26년 1차대비

담당 : 임종희 교수

cafe.naver.com/impaper64

(정답 및 해설)

1. ○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2006.7.6. 2005도6810).
2. ○ 옳은 설명이다.
3. ○ 제146조
4. ○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대판2000.11.24. 2000도4078).
5. ○ 대판1958.1.14. 4290형상393
6. ○ 대판2006.12.7. 2005도3707
7. ○ 대판2003.12.12. 2003도4533
8. X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협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2011.4.28. 2009도3642).
9. ○ 대판1982.1.26. 81도1931
10. X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판2004.3.26. 2003도8226).
11. X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판1995.12.26. 93도904).
12. X 단순한 안부인사에 불과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1992.6.12. 92도736).
13. X 그로써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절차에서 작성되는 신원보증서는 체포된 피의자 석방의 필수적인 요건이거나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의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신원보증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분, 직업,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피의자나 신원보증인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의 출석 또는 형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증인에게 법적으로 진실한 서류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2003.2.14. 2002도5374).
14. X [1]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판2010.2.11. 2009도12164).
 15. X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2010.2.11. 2009도12164).
 16. ○ (피고인이 변호인으로서 단순히 갑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변론과 그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갑과 을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진행 중이며 갑 피고사건의 수임과 변론이 거래의 향배와 불가결한 관련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을에게서 갑 피고사건을 수임하고, 그들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도왔으며, 스스로 합의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방안까지 용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갑과 을의 거래관계에 깊숙이 관여한 행위를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하는 것일 뿐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인 갑에게 결의를 강화하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한다) (대판2012.8.30. 2012도6027)
 17. ○ 대판2003.12.12. 2003도4533
 18. ○ 옳은 설명이다.
 19. ○ 제152조 제1항, 제153조
 20. ○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2003.7.25. 2003도180).
 21. ○ 대판1998.3.10. 97도1168
 22.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9. 3. 12. 선고2008도11007판결). 결국, 증인의 진술이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인 경우 위증죄의 요건인 ‘허위의 진술’

임종희 형사법



26.1차대비 형법각론 확인학습 22회

26년 1차대비

담당 : 임종희 교수

cafe.naver.com/impaper64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 내용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3. ○ 대판1995.4.11. 95도186
- 24. ○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되는가를 불문하고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허위가 인정되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 경우, 모르는 사실을 잘 안다고 진술한 경우(대판 1986.9.9. 86도57) 진술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경우(대판 1985.10.8. 85도783)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 25. X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혐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모해목적 가진 자)가 신분이 없는 자(모해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모해위증죄의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단순 위증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법원1994. 12. 23. 선고93도1002판결).
- 26. ○ 대판2008.6.26. 2008도3300
- 27. ○ 대판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판결
- 28. ○ 대판2010.2.25. 2007도6273
- 29. ○ 대판2011.11.24. 2011도11994
- 30. ○ 대판2011.7.28. 2009도14928 ; 대판2012.10.25. 2009도13197
- 31. ○ 대판1989.1.17. 88도580
- 32. ○ 대판1990.2.23. 89도1212
- 33. ○ 대판1993.12.7. 93도2510
- 34. ○ 대판1998.4.14. 97도3340
- 35. ○ 대판 2005.3.25. 2005도60
- 36. X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증죄의 교사범이 인정된다(대판2004.1.27. 2003도5114).
- 37. ○ 대판2000.11.28. 2000도1089